

4. 근거 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 사항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044-201-6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0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12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연번	주무부처	자격 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제품 제조산업기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19.1.9.~12.31.
2	산업통상자원부	로봇기구개발기사		
3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4	산업통상자원부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5	식품의약품안전처	떡제조기능사		
6	고용노동부	보석감정산업기사		
7	고용노동부	보석디자인산업기사		
8	국토교통부	가구제작산업기사		
9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장식산업기사		
10	농촌진흥청	버섯재배산업기사		
11	행정안전부	방재기사		
12	환경부	환경위해관리기사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일신네이처(김재학)

나. 전화번호 : 02-473-4527

2. 명칭 :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활용한 수평흐름식 초기우수 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로프형 섬유여재가 적용된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 구조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초기우수 내 고형물을 제거하는 기술로 고형물 부하량을 향상시키고 설치부지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임. 또한, 상향류식 공기역세방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여과·역세척·배수 등 일련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후속 강우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운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술이다.

<범위>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으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술, 하부 산기장치를 통해 여과체 내 누적된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향류식 공기역세척기술, 수위 계측값을 이용한 전체 공정의 자동제어기술을 포함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부건설(주)(이중길), ② 양우건설(주)(고삼상), ③ (주)한라(박철홍), ④ (주)한국건설공법(황기수)

나. 전화번호 : ① 02-3484-2114, ② 02-2679-5200, ③ 02-3434-5871, ④ 02-417-8407

2. 명칭 :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스토퍼파일 공법)